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 1998. 9. 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수정이유

-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중 “계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98. 8. 22 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을 제출하였으나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5875호, '98. 8. 31) 개정으로
- 전문위원의 담당사무에 따른 지휘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수정주요골자

- 전문위원은 담당사무에 대하여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 외의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지휘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수정근거

경남도 행정 12200 ~ 614 ('98. 8. 31) 기구정원규정등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중 “전문위원과”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담당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 (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사무과장과</u>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u>통할하고</u>,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 <u>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u></p>	<p>제2조 (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사무과장과 전문위원 및</u>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u>통할하고, 전문위원과</u>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u>통할하고</u>,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 <u>전문위원은 담당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p>